

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5.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4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조직의 안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일자리추진단을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정국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 신설(안 제6조)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2015년 3월 31일까지(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일자리추진단”을 조직의 안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단위의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 재정국 소속으로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신설함.
- 안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함.

- 안 제10조 관련 별표에 영등포구 보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으로 수정함.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과 사회적
기업팀 그리고 사회복지과 지역일자리사업팀으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일자리추진단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재정국
소속 한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 집중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1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10개 이내
	중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